

청 주 지 방 법 원

제 1 - 1 형 사 부

판 결

사 건 2021노189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

피 고 인 김드보라 (*****-*****)

주거 제천시 청전대로 ***-*, * 동 ***호

등록기준지 강릉시 임당동 ***

항 소 인 쌍방

검 사 김* * (기소), 박* * (공판)

변 호 인 법무법인 추양

담당변호사 이* *

법무법인 파라클레투스

담당변호사 이* *

원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. 1. 28. 선고 2020고단352 판결

판 결 선 고 2021. 12. 1.

주 문

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이 유

1. 항소이유의 요지

가. 검사(법리오해)

○ 피고인 및 제천시 지역 집회 참석자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이하 ‘감염병예방법’) 시행령 제14조의 별표1의3에서 정한 코로나19 확진자들과 접촉 또는 같은 감염 위험요소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‘역학조사의 대상’임에도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.

○ 피고인의 행위는 역학조사의 대상 자체를 은폐하여 조사 대상자들을 특정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역학조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이므로 ‘역학조사 방해’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.

○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4조의 별표1의3에 규정된 역학조사 방법은 예시적 규정이므로, 제천시 보건당국의 명단 제출 요구도 동법 및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에 해당하고,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.

나. 피고인(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)

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공소제기는 자의적이고 미필적으로라도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로서 공소권남용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실체 판단을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.

2. 판단

가.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

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나 집회 참가자들은 감염병예방법 소정의 역

학조사의 대상이 되는 ‘감염병환자등’이라고 보기 어렵고, 제천시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진단검사는 감염병예방법 소정의 ‘역학조사’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.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.

나.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

피고인의 상소는 불이익한 원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어서 재판이 자기에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한 상소권을 가질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인 무죄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부적법하다(대법원 1994. 7. 29. 선고 93도1091 판결, 대법원 2005. 4. 14. 선고 2004도8585 판결, 대법원 2020. 3. 27. 선고 2017도20455 판결 등 참조).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소기각판결을 해줄 것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한 항소는 적법한 항소라고 할 수 없다.

3. 결론

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,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이현우 _____

 판사 박성민 _____

판사 남기용 _____